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I유형 수급자격 인정 되었으나 연락 두절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1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-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이시0 로로렌	1982.1.23.	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17번길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의견제출	연락두절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함	1) 동 서류를 2024년 2월 27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(폐문 부재) 2) 공고기간 내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고용센터로 연락 요청

4. 공고기간 : 2024. 3. 12. ~ 2023. 4. 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이현수(031-646-10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